

의안번호	제2900호
의 결	. . .
연 월 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원순 의원 등 4인
발의연월일	2025. 2. 18.

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원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90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18.

발 의 자 : 김원순, 김향숙, 김석한,
이쌍자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2024. 12. 20. 개정) 및 제13조(2024. 1. 2. 개정)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한 일부 내용을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, 법적 의무를 충족하며, 효율적인 도시숲 조성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5호

- 예고기간: 2025. 2. 18.(화) ~ 2025. 2. 24.(월)[6일간]
- 예고결과: 의견 1건(녹지공원과)

조례안 내용	수정안	수정이유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② (생략) ③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<u>한다</u> .	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② (생략) ③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<u>하며,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.(신설)</u>	도시숲법 제13조제3항 개정사항 반영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6명”을 “7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

제9조제1항 중 “법 제12조제2항”을 “법 제12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내야 할 자가 이를”을 “30일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, 부담금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납부 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	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6명</u>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 ----- --- <u>7명</u> ----- -----.
③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4.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</u>
제9조(가로수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승인) ① <u>법 제12조제2항</u> 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9조(가로수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승인) ① <u>법 제12조제3항</u> 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부담금의 징수)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<u>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</u> 납부 기간을	제11조(부담금의 징수) ① ----- ----- --- <u>30일내의 기한을 정하여</u> <u>납부 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, 부</u>

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. <단서
신설>

② (생략)

담금을 ----- . 단, 납
부 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
경우에는 60일내의 기한을 정하
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

②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(발췌)

□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12조(가로수의 조성·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·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(이하 “진단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1. 23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·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승인절차,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4. 1. 23.>

1.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
2. 가로수의 옮겨심기
3. 가로수의 제거
4. 가로수의 가지치기
5.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·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12. 20.>

⑤ 「도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·유지하여야 하며,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

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. 23., 2024. 12. 20.>

⑥ 가로수의 조성·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, 진단조사의 방법·대상·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) ①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 중 도,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2. 27., 2024. 1. 23.>

1.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
4.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
5.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4. 1. 2.>

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,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. <개정 2024. 1. 2.>

1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2.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
3.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4.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
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
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